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 2796

제안일자 : 2021.12.17 제 안 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조례안의 자구를 정리하고, 불필요한 사업시행 근거를 삭제하며, 자무위원회 위원의 위촉대상을 확대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등 자구를 정리함(안 제1조, 제2조, 제5조)
- 종합계획의 수립과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제도, 시행규칙 위임규정을 삭제함(안 제4조 및 제7조, 제10조)
- 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의 자문범위를 수정하고, 자문위원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자를 위원 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(안 제9조 및 제10조)

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1조(목적) 중 "규정함으로써 승강기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"을 "규정함"으로 한다.
- 안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제 28조제1항"을 "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8조제1항"으로 한다.
- 안 제4조를 삭제하고, 안 제5조 및 안 제6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.
- 안 제5조(종전의 제6조) 중 "따른 종합계획 수립과 제5조에 따른"을 "따른"으로 한다.
- 안 제7조 및 안 제10조(시행규칙)을 각각 삭제하고, 안 제8조,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를 각각 제6조,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.
- 안 제6조(종전의 제8조)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 항으로 한다.

안 제7조(종전의 제9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승강기안전관리 지원 자문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안전한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시 승강기 안전관리 산업 육성·지원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.
 - 1. 승강기의 안전관리 방향 및 목표
 - 2. 제4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
- 안 제8조(종전의 제10조)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4.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,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		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	제1조(목적)		
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			
규정함으로써 승강기 안전인증 및	<u> 규정함</u>		
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			
<u>함</u> 으로써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			
승강기 이용 시민의 안전 및 편의			
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		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(생 략)	1. (조례안과 같음)		
2. "승강기 유지관리"란 <u>「승강기</u>	2 <u>「승강기</u>		
<u>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1항</u> 에 따	안전관리법」(이하"법"이라 한		
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	<u>다) 제28조제1항</u>		
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			
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			
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			
다.	– .		
가. ~ 라. (생 략)	가. ~ 라. (조례안과 같음)		
제4조(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	<u><삭 제></u>		
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5			
년마다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			
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			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			

항을 포함한다.

- 1. 승강기 안전관리의 현황과 전 망
- 2. 승강기의 안전관리 방향 및 목 표
- 3. 승강기의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- 4. 승강기의 안전관리 사업을 위 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

제5조 (생략)

제6조(실태조사)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론 종합계획 수립과 제5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 관 등과 협력하여 승강기 안전관 리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 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) ① 시장은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서울형 승강기 안전관리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, 예산

<u>제4조</u> (조례안 제5조와 같음)
<u>제5조(</u> 실태조사) <u>따</u>
<u> 근</u>
<u><삭 제></u>

- 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서울형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 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 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 다.
- 구성 및 운영) ① ~ ④ (생 략)
 - ③ (생략)
 - ④ (생략)
- 제9조(승강기안전관리 지원 자문위 제7조(승강기안전관리 지원 자문위 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안전한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 산업 육성 · 지원 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.
 - 1.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- 2. 제5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제7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

- 제8조(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제6조(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) ① ~ ④ (조례안과 같음)
 - ⑤ (조례안 제3항과 같음)
 - ⑥ (조례안 제4항과 같음)
 - 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안전한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 산업 육성·지원 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.
 - 1. 승강기의 안전관리 방향 및 목 丑
 - 2. 제4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

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

- 4.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
- <u>제10조</u>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
 - ② 위원회는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 직 위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1. ~ 3. (생략)

<신 설>

4. (생략)

③ ~ ⑦ (생 략)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행정적·재정적	지원에	관한	사
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	

- 4.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 에 필요한 사항
- <u>제8조(위원회</u> 구성 및 운영) ① (조 례안과 같음)

 - 1. ~ 3. (조례안과 같음)
 - 4.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,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
 - 5. (조례안 제4호와 같음)
 - ③ ~ ⑦ (조례안과 같음)<삭 제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승강기 이용 시민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승강기"란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.
 - 2. "승강기 유지관리"란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 다.
 - 가. 주기적인 점검
 - 나.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
 - 다. 승강기부품의 교체
 - 라.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승강기의 안전 관리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승강기 안전관리 사업) ① 시장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승강기 안전관리 기반시설 확충 사업

- 2. 승강기 관련 기술개발 지원 사업
- 3.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·운영
- 4. 산업체, 학교, 연구기관, 공공기관 등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
- 5. 승강기 안전관리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훈련 사업
- 6. 서울특별시의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에서 설치·운영하는 승강기 관련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지원 산업
- 7.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및 그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관련 기관,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를 영위하는 자,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공기업 및 출자·출연기관 등에 기 술개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5조(실태조사)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6조(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부실의 사전예방과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(이하 "점검단")을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점검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점검은 2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.
 - ③ 시장은 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,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승강기안전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

수 있다.

- ④ 점검단의 전문위원은 승강기 제조·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승강기의 관리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전문위원 후보를 추천받을수 있다.
 - 1.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퇴직공무원으로서 건축·안전관리·기계·전기 등 분 야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사람
- 2.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,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
- 3. 승강기 관련분야(제조·유지관리 등)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- ⑤ 점검단의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, 임기 만료 시 위촉이 자동해제 된다. 다만 시장은 임기 만료 전에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⑥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·범위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 이 경우 시장은 점검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- 제7조(승강기안전관리 지원 자문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안전한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 산업 육성·지원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.
 - 1. 승강기의 안전관리 방향 및 목표
 - 2. 제4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
- 4.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
- 제8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승강기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승강기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는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- 1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 - 2.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
 - 3. 승강기 안전관리공단 및 승강기 관련 협회 임직원
 - 4.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,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
 - 5.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승강기안 전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.
 -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-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